

IV

공공시설계획

① 공공시설계획

IV. 공공시설계획

1 공공시설계획

1. 기본방향

- 공공시설계획에 대한 결정기준은 「도시계획시설의결정·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」 제94조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함
- 공공시설의 입지는 주민의 욕구충족, 서비스에 대한 접근기회의 균등등을 고려하여 배치
- 동단위의 소생활권에 입지되어야 할 공공시설은 분산배치를 유도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이용의 편의성 고려하여 배치
- 시청, 경찰서, 소방서, 전화국 등은 지방자치법과 관련하여 자족적인 도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현재의 지역중심을 고려하여 배치
- 공공시설의 배치기준은 시설별 법적 기준 등을 근거로 하되, 향후 공공시설 전환 등을 고려하여 적정 원단위 기준을 설정함
- 신설되는 공공시설은 공공서비스의 공급측면에서 균형입지를 도모함과 동시에 수요측면에서도 주민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인구분포, 생활권 등을 고려하여 접근성이 양호한 곳에 입지되도록 함

2. 배치기준

☞ 동사무소

- 행정자치부의 동사무소 설치기준에 의하면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구 3만인 이상일 때 분동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, 시설면적에 관하여는 법규상 특별 규정 없음
- 현재 동사무소 설치기준에 의거할 때 2020년까지 1~2개의 동사무소가 증가되어야 할 것이나, 향후에는 관 주도에서 주민 주도로 행정이 전환되면서 현재의 동사무소 기능이 축소되고 주민자치센터(Community Center) 등 새로운 기능이 강화될 것임
- 또한 행정업무 전산화에 따른 민원업무 감소 등 동사무소 고유의 기능이 전환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므로, 동사무소가 문화, 교육 중심기능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필요





소방서

- 각 도시별로 1개소의 소방서를 배치하고 소방파출소가 5개소를 초과하는 경우 5개소이하마다 1개씩 추가 설치(소방력기준에관한규칙 제3조)
- 소방력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한 2020년 삼척시의 소방서는 1개소로 충분

소방파출소

- 소방력기준에관한규칙에 의거, 화재, 재난 등에 의한 대응서비스가 향상 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평균서비스 인구를 중도시 인구 10만~50만미만 시를 준용하여 2만인당 1개소로 배치하며 현재보다 1~2개소가 필요

소방파출소 설치기준

구분	대도시	중도시	소도시	소도읍
관할 면적	5km ²	10km ²	15km ²	20km ²
관할 인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서울 : 7만명 • 부산 : 3만명 • 대구·인천·광주·대전 : 2만명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인구50만이상인 경우의 시 : 3만명 • 인구 10만이상 50만미만의 시 : 2만명 	1만5천명	1만명

자료 : 소방력기준에관한규칙(제4조관련) 별표 1

경찰서·파출소

- 경찰서·파출소 설치기준에 의하면 경찰서는 인구 40~50만명을 관할인구로 정하고 있으나 현재 수준을 유지함
- 파출소의 경우에는 관할구역 인구는 3만인이 기준이며, 관할구역 면적은 약 1.5km²이고,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에 의하면 총 3천내지 4천세대당 1개소씩 설치하도록 되어 있음
- 현재 경찰청의 파출소 통·폐합 정책 추진을 반영하여 현재 시설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
경찰서·파출소 설치기준(경찰청 내부지침)

경 찰 서	파 출 소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관할구역 인구 : 40~50만인 • 시설면적 : 2,500평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관할구역인구 : 3만인 이상 • 관할구역면적 : 약 1.5km² • 시설면적 : 50평



☞ 우체(분)국

- 정보통신부의 우체국설치기준에 의하면 도시지역의 경우 법정동당 1개소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, 현재 읍면지역에는 인구가 많은 읍면은 2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기타지역은 1개소가 입지하고 있으므로 현재 수준을 유지

☞ 보건소

- 삼척시민의 보건 및 위생환경 개선을 위해 동지역의 기존시설은 존치하고 도계, 원덕, 근덕생활권에 각1개소씩 총 3개소를 신설

☞ 기타 공공시설

- 2020년의 계획인구를 100,000명으로 설정하였으므로 인구증가에 따른 공공시설 확대가 필요하나 현재의 이용형태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제반공공시설 유지

